◉ **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2-호**

◉ **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-호**

◉ **환경부고시 제2022-호**

◉ **국토교통부고시 제2022-839호**

◉ **해양수산부고시 제2022-호**

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8조 제8항, 제49조 제8항 등에 따라 「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」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
2022년 12월 23일

농림축산식품부장관
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환경부장관

국토교통부장관

해양수산부장관

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

1. 개정이유

「탄소중립기본법」이 시행('22.3.25)되어 변경된 관련 내용을 지침에 반영하는 한편, 국내·외 감축실적 인정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파리협정에 따라 상응하는 조정이 필요 없는 국내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경우 일반사업 절차로 검·인증할 수 있도록 함(제30조)

나. 국외 외부사업을 인증할 때, 환경부가 관장부처에 제출된 시점부터 관장부처와 동시에 검토하여 소요되는 기간을 최소화(제33조)

다. 국외에서 수행한 외부사업을 유형 구분 없이 20% 이상 국내기업이 참여한 경우로 정하고, 제출서류·검토항목을 간소화(별표 9)

3. 기타 사항

「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」 일부개정고시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(http://www.mafra.go.kr),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(http://www.motie.go.kr), 환경부 홈페이지(http://www.me.go.kr),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http://www.molit.go.kr), 해양수산부(http://www.mof.go.kr)에 전체 내용 게시